

제341회 경상북도의회(임시회)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3. 8. 29.(화)

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우청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: 이우청·허 복·백순창·한창화·박순범·남영숙·최덕규·서석영
황재철·신효광 의원(10명)

2. 제안이유
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대상안전 발생 빈도가 적고 회의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·운영 조건 규정(안 제2조)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자동 해산 규정(안 제3조)
-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규정 수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4. 관련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불임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 : 불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 : 불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불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 8. 22. ~ 8. 27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84호
- 의견제출 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라 회의 개최 및 자문 등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

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제2조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제3조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대상 안전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 하도록 규정함
- 제5조, 제6조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가·운영에 대하여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,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
- 행정안전부에서도 국정과제¹⁾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현재

1) 국정과제(13)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

(위원회 통폐합) 각종 부처·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적 차원에서 정비

-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, 개최실적이 부족한 위원회는 통·폐합,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, 운영실태와 정비실적을 국민에게 공개

경북도의 경우 법령 등에 근거한 204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중(정비완료 8, 정비중 5)에 있음. 또한, 같은법에 유사한 기능의 안전관리위원회²⁾를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, 행정적인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

-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될 경우 대상안전 발생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)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조(목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

참고 1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

- ◇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 제고

I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 황

- (위원회 수) '21.12월 기준 29,474개로, 매년 지속 증가*
* 23,500개('17년) → 24,874개('18년) → 26,395개('19년) → 28,071개('20년)
- (설치근거) 법령 65.3%(의무설치 55.7%, 임의 9.4%), 조례 30.4%, 기타 4.6%
- (회의개최) '21년 총 110,903회로 위원회별 평균 3.8회 개최
- (기타) 위원 수는 총 400,046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13.6명 구성, 위원회 운영경비는 약 456억원으로 위원회별 평균 154.8만원 소요

□ 문제점

- (회의실적 저조)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4.2%(7,146개),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2.3%(3,639개)

구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(비율)	22.5%	23.5%	23.6%	25.6%	24.2%

- (비효율 운영) 유사·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,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스스로 정비 곤란

II 위원회 정비 방안

< 기본 방향 >

정비 대상		정비 방안
법령상 임의위원회 / 조례상 위원회	신설 위원회	신설 최대한 억제
	미개최위원회 · 3년간 미개최 · 1년간 미개최	폐지 ⇒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
	비효율위원회 · 기능 유사 중복 · 기능 독립 * 연 3회 미만 개최, 구성·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	통·폐합 ⇒ (목적달성) 폐지 (한시필요) 존속기한 설정 (내부안건) 협의체 전환 (존속필요·안건少) 비상설화
	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(행안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 · 미개최 · 비효율	⇒ (사전)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(사후)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

참고 2

경상북도 위원회 정비 현황

출처 : 기획조정실

☐ (총위원회 수) 법령, 조례,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'23.5월말 기준 204개

☐ (정비완료) 총 8개

- '22년 폐지 :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위원회, 문화예술위원회, 한우육성협의회,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, 탄소중립 추진위원회, 블록체인특별위원회
- '22년 비상설화 : 포항영일만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
- '22년 통폐합 : 도서관운영위원회(도서관위원회로 통폐합)

☐ (정비 중) 총 5개

- 비상설화 :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,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,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
- 통폐합 :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,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